

정·부학생회장 선거규정

제정	1979.03.01.
개정	1991.02.11.
개정	1994.03.01.
개정	1996.12.26.
개정	1998.12.02.
개정	1999.01.27.
개정	1999.12.15.
개정	2000.08.08.
개정	2001.06.15.
개정	2009.02.06.
개정	2012.02.01.
개정	2013.08.12.
개정	2017.10.12.
개정	2019.1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학생회칙 제9조에 의거 공정한 선거와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정학 시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사항과 같다.

- ①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 ② 직전학기 평균평점B⁰(3.0)이상이며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 ③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④ 삭제<2017.10.12.>
- 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
- ② 회장 후보자는 부회장 후보자를 동반하여 입후보 하여야 하며 당락을 같이 한다.

제5조(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로 한다. 다만, 11월에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에 실시한다.

제6조(선거관리비용)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며, 후보자로부터 공탁금등 금품 수수를 일체 금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처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선관위는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학생 5명,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2명,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15일전에 구성되어야 하며, 당선 공고 후 자동 해체된다.

③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제명한다.

제9조(관장사항)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선거일정, 절차 및 공고
- ② 입후보 등록 및 자격심사
- ③ 입후보자에 관한 공고 및 사무일체
- ④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 ⑤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⑥ 재선거 여부 결정
- ⑦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10조(선거일공고) 선거일은 선.관.위의 제청으로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정하며, 선거일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시킨다.

제3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절차

제12조(등록서류) 입후보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후 3일내에 다음의 서류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② 서약서(소정양식)
- ③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소정양식)

- ④ 선거인 150인 이상의 추천서(학생증사본첨부)
- ⑤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⑥ 선거운동원등록원서(소정양식)
- ⑦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등록절차) 선.관.위는 등록을 마감한 즉시 자격을 심사하고, 추첨으로 기호를 정하여 공고 한다.

제4장 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제14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한다.

- ② 선거운동은 등록심사 공고후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소견발표, 벽보, 유인물로 하되, 사전에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선거운동의 유인물은 현수막 5점, 벽보 10점, 정책집 3000매 이내로 허용한다. 현수막 규격은 6m×1m 이내, 벽보는 A1, 정책집은 A4(접지가능)이며, 각종 선거유인물은 투표 1일전 17:00까지 철거 정리한다.
- ⑤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거운동원은 정부 후보 1팀당 16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입후보자 등록 서류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선거의 일부나 전부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선언 할 수 있다.

- ① 등록서류의 부정
- ②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의 유포, 매수, 금품수수, 접대, 향응, 폭행, 협박, 납치행위
- ③ 투표, 개표의 방해
- ④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⑤ 교내, 외 선거사무실을 두는 행위(합숙 등)
- ⑥ 유권자에게 우편물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반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⑦ 선거규정 위반 또는 공정한 선거의 방해, 위법, 부정한 행위

제5장 투표 및 개표

- 제16조(투표·개표)**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으로 하며, 선거일 3일 전에 견본을 제시한다.
- ② 투표 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③ 선거인은 학생증, 주민등록증, 도서대출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확인, 날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 ④ 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
- ⑤ 다음의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4. 후보자의 성명 아래 기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
 5. 훼손낙서 또는 지정된 기표 기구로 기표하지 않은 것
 6. 기타 유무효표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투개표 장소에는 선관위원, 학생지도위원, 참관인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제17조(참관인의 자격) 참관인의 자격은 다음 항과 같다.

- ①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재학생 2명, 학보사 기자 2명으로 한다.
- ②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장 당선결정

- 제18조(당선결정)** ① 선거권자 1/3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 ② 후보자가 1조인 때에는 찬반 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1/3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위 1.2항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학과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 ⑤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선자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장 이의신청·선거무효·재선거

- 제19조(이의신청)** ①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후보자는 선거일 포함 3일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요청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선 또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다.

② 유권자의 선거권을 고려 투·개표 중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제20조(선거무효) 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 ② 선거운동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재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재선거를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 ② 당선자가 회장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피선거권이 정지 및 상실되었을 때)
- ③ 제18조 3항에 의거 당선자가 없을 때
- ④ 학생회칙 제8조 3항에 의거 회장 유고시
- ⑤ 4항에 의해 정·부학생회장을 선출할 시는 집행위원 및 대의원회로 선거인단을 구성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개정) 이 규정 개정은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3조(기타)

- ① 기타 선거의 세부 시행세칙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② 선관위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199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0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0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규정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